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에 전통조경 관련 제도와 정책의 기획·총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세계유산특별법 제정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세계유산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특성화 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1명(교수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개정(2020.12.10.시행)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의 교육과정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 과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 법령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활용정책과·국제협력과·근대문화재과·세계유산팀”을 “활용정책과·국제협력과·근대문화재과·세계유산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계유산팀장”을 “세계유산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5호 중 “수발·통제·발간”을 “접수·발송·통제·발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통문화전문과정”을 각각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전통공예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제1호 중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중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관한 인문교양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문화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11호 중 “수발·통제·발간”을 “접수·발송·통제·발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9호 중 “분류·수발·심사·보존”을 “분류·접수·발송·심사·보존”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제6호 중 “분류·수발·심사·보존”을 “분류·접수·발송·심사·보존”으로 한다.

제12장(제2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4조(평가대상 조직) 문화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5 중 총계 “274”를 “27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73”을 “277”로 하며, 일반직 계 “272”를 “27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7”을 “59”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5”를 “47”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83”을 “28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2”를 “286”으로 하며, 일반직 계 “281”을 “285”로 하고,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2”를 “64”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학예연구사 “49”를 “51”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00”을 “10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9”를 “100”으로 하며, 특정직 계 “46”을 “47”로 하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37”을 “38”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

문화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 문화재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정책과	3명 (5급1, 7급2)	2023년 9월 30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생 략)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활용국에 <u>활용정책과</u> · <u>국제협력과</u> · <u>근대문화재과</u> · <u>세계유산팀</u> 및 <u>문화유산교육팀</u> 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학예 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 기 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임업사 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 다.	② ----- <u>활용정책과</u> · <u>국제협력과</u> · <u>근대문화재과</u> · <u>세</u> <u>계유산정책과</u> ----- ----- -----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u>세계유산팀</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u>세계유산정책과</u> 장-----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9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① (생 략)	제9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② -----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문서의 <u>수발</u> · <u>통제</u> · <u>발간</u> 및 기록물 관리	25. ----- <u>접수</u> · <u>발송</u> · <u>통제</u> · <u>발간</u> -----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제10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생략)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전통문화전문과정</u>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u>전통문화전문과정</u> 교육 제도 개선과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u>전통문화전문과정</u>의 수요조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의2. (생략) <u><신설></u> 4. ~ 13. (생략)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전통문화전문과정</u> 교육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2. ~ 15.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전통문화교육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전통문화교육원</u> ----- ----- -- 2. <u>전통문화교육원</u> ----- ----- -- 3. ----- -- <u>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u>-----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u>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전통공예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u> 4. ~ 13. (현행과 같음) ③ ----- -----. 1. <u>전통문화교육원</u> ----- ----- 2. ~ 15. (현행과 같음)
---	---

<신 설>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②

(생략)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12. ~ 17. (생략)

④·⑤ (생략)

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② (생략)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

10. ~ 16. (생략)

④ (생략)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② (생략)

16.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중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관한

인문교양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문화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접수·발송·통제·발간 -----
--

12. ~ 1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 분류·접수·발송·심사·보존 --

10. ~ 1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문서의 <u>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u> 7. ~ 11. (생 략) ④ ~ ⑥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 <u>분류·접수·발송·심사·보존</u> -- 7. ~ 11.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u>제12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u>제24조(평가대상 조직) 문화재청</u> <u>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18과 같다.</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5]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74</u>	<u>278</u>	+4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73</u>	<u>277</u>	+4
·	·	·	
·	·	·	
일반직 계	<u>272</u>	<u>276</u>	+4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u>57</u>	<u>59</u>	+2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또는 학예연구사	<u>45</u>	<u>47</u>	+2
·	·	·	
·	·	·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83	287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82	286	+4
일반직 계	281	285	+4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2	64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9	51	+2

	.	.	.	
	.	.	.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00	101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99	100	+1
특정직 계	46	47	+1
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	37	38	+1